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2023년 3월 말경 사업장 2층 ○○ 냉동창고에서 헬리곱터 프로펠러 같은 굉음이 발생하여, 며칠 후에 ○○ 측에서 제품 교체로 굉음은 살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4월 10일경부터 저의 사업장에서 "웅~ 웅~"하는 공명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서 두통 및 메스꺼움, 이명 현상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건물 실내 기둥에 지속적인 진동이 발생하여 기둥 내부에 균열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관리소장 또한 건물 진동과 소음을 알고 있어 지속적으로 공사를 요청했지만, ○○ 측에서 계속적인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저 또한 4월 11일 건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 측에서 무시하였습니다.
- 이후 4월 12일 ○○구청 맑은 환경과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청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관리사무소장과 ○○ 점장만을 만나서 진동 및 소음에 대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 점장을 통해서 윗선에 결재를 받는 일과 결제 후에 자재 수급 등을 이유로 5월 17 일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안내를 받고서 기다렸지만, 이후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관리소장을 통해서 ○○ 점장이 교체된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하여 시간만 끌며 기다리게 하다가 저와 관리 사무소와 계속적으로 소통해온 점장을 교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기망 행위를 하는 점이 매우 괘씸하다고 생각됩니다.
- 저는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약을 복용

중이며, 소음이 심한 아침 시간과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귀마개를 착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벽의 진동으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영업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배상되어야 함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냉동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신청인에 3,000천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상가 2층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영업의 필수시설인 냉동·냉장 설비를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주기 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정 범위 의 소음 및 진동은 불가피하며, 이는 노후화 된 상가건물 내 입점 상 인 간에 수인 가능한 통상적 범위 내로 판단됩니다.
- 피신청인은 해당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이상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05.09. 피신청인은 전문업체를 통해 1.1백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계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는 등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해의 객관적 내용, 해당 피해와 피신 청인의 행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언급한 건물의 균열 등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냉장 설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노후화(사용승인일 1988.06. 재건축대상)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사업장 소음 및 진동의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본 신청 건은 신청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접하여 상가 중심의 사업장 및 공동주 택이 밀집하여 비교적 정온한 환경은 아니다.

나. 당사자 영업 건물 현황

○ 위 최 : ○○구 ○○로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26,169 m²

○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 주 용 도 : 판매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용승인 : 1988.6.20.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진동 피해 평가

- 피신청인의 냉동·냉장 기계설비의 저주파소음과 진동 측정자료 및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로 신청인의 영업환경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저주파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

- 일 시 : 2023.10.10.(화) 14:45

- 측정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측정장소 : 신청인 영업장 내부

- 측정구분 : 저주파소음 및 진동 분석

- 저주파소음 분석 결과

중심주파수 (Hz)	12.5	16	20	25	31.5	40	50	63	80
기준(dB)	90	87	83	78	70	64	61	55	50
측정소음레벨(dB) 14:45~14:50	50.3	52.8	53.6	54.7	60.3	50	52.5	57.2	45.4
측정소음레벨(dB) 14:50~14:55	51.5	50.1	52.6	55.1	60.3	49.1	52.3	58.1	46.7

- 측정소음도 : 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

- 배경소음도 : 실외기 가동중지 불가하여 배경소음도 측정 불가

- 대상소음도 : 배경소음도를 구할 수 없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정함

※ 측정소음도 주파수별 음압레벨

- 진동 분석 결과

측정일시	L ₁₀ 진동레벨 (dB(V))	원자료	기준 (dB(V))
2023.10.10. 14:45~14:50	36.0	Manual 5min 0d 00:05:00 36.0dB	주간:65 이하
2023.10.10. 14:50~14:55	36.1	Manual 5min 0d 00:05:00 36.1 dB 2.7 min 31.8 dB 2.7 min 31.8 dB 2.7 min 37.1 dB 2.7 min 2.7 min 2.7 min 37.1 dB 2.7 min 2.7	야간:60 이하

4. 판 단

- 신청인 사업장에서 저주파소음 측정결과 63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음압레벨이 최대 58[dB(A)]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음압레벨 기준인 55[dB(A)]을 3[dB(A)] 초과하여 신청인의 저주파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 사업장에서 진동 측정 결과 최대 36[dB(V)]로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인 65[dB(A), 주간]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